

추 가 약 정 서

(글로벌팩토링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(“은행”)과 ○○○○주식회사(“회사”)는 200 년 월 일자 [납품 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서](이하 “기본 계약서”라 한다.)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공급업체의 매입신청 방법 및 대상

- ① 공급업체(“기본 계약서” 제2조 제1호 소정의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)는 “은행”과 각 공급업체간의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공급업체의 “회사”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개별적으로 “은행”에게 선적서류(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사본)를 첨부하여 매입을 신청한다.
- ②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채권매입은 “회사”가 “은행”에게 통보한 “기본 계약서”제4 조 제2항 또는 제5조의 통보서에 기재된 매입일로부터 기산(신청일 포함)하여 그 만기일까지 기간이 3개월이내인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.

제2조 공급업체에 적용할 할인율

- ① 할인율
 -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%
 - 기준금리() + ()%
- ② 할인율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은행”의 “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”을 적용하기로 한다.

제3조 공급업체에 대한 총 매입한도 및 지급의무

- ① “회사”의 모든 공급업체에 대한 「외화매출채권매입」 총한도는 미화_____ 범위내에서 운용하기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총매입한도는 “회사”의 공급업체별로 분배하여 운용하기로 하며, 각 공급업체별 매입한도의 분배 및 관리는 “은행”의 책임하에 운용하되, “회사”가 공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입한도를 설정하기로 한다.

제 4 조 조기상환

“회사”가 “기본계약서”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수금 지급채무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, 조기상환일수에 대하여 본 추가약정서 제2조에 따라 당해 매입에 대하여 적용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손해로 보고 “회사”는 조기 상환시에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.

제 5 조 추가약정의 효력

- ① 본 추가약정의 효력은 본 추가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추가약정은 1년마다 재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 추가약정의 유효기간 중 “기본계약서”의 효력이 종료되면 이 추가약정도 자동 종료된다.
- ② 공급업체에 대한 총 매입한도 변경, 급격한 금리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이 합의하에 추가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(회사)

○○○주식회사

(주소)

○○○

대표이사

(인)

(은행)

주식회사 하나은행

(주소)

○○○○

○○○지점장

(인)

본인의 자서확인	소속		직위		성명	(인)
----------	----	--	----	--	----	-----